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0호

베러 투모로우 / 서울스포츠

스포츠 폭력, 이제는 아웃

홍덕기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등 유죄 확정자 명단 공개

정윤주 YTN PLUS 기자

여자핸드볼 경남개발공사

합숙훈련 폐지... “시대변화 따라야 vs 결속력 약화 우려”

류민기 경남도민일보 기자

대한사격연맹

‘언어폭력, 합숙 규정 위반’ 국가대표 3인에 엄정 징계

최원영 스포츠월드 기자

스포츠와 법의 만남

“스포츠계 징계”

이장호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변호사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개최 안내

일시: 6월 25일(금) 오후 4시 ~ 5시 30분

“스포츠클럽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스포츠인권**』

“프로축구선수협, 선수 동의 없는 이적 조항 수용 못한다”

“워커, 한쪽 무릎 꿇기, 포기해서는 안 될 행위”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주제

스포츠클럽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 일시 : 6/25(금), 오후 4시 ~ 5시 30분

○ 방식 : 실시간 온라인(ZOOM, YouTube)

◇ 사회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발제

조영웅 | 변호사

◇ 토론

주성택 | 한국스포츠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주재헌 | ESPOUSE EARTH 대표(변호사)

허현미 | 경인여자대학교 교수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스포츠 폭력, 이제는 아웃

멍든 메달은 면죄부 될 수 없어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폭력에 노출될 걱정 없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세상.
어쩌면 당연한 권리지만 스포츠 분야는 그동안 폭력의 대물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폭력은 고이 간직해 스포츠 꿈나무에게 물려줘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니다.

글·홍덕기



폭력의 일상성

올해 초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과거 학생 선수 시절 학교폭력 문제가 터져 나왔다. 학교폭력이 스포츠 분야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스포츠 폭력 실태 조사 결과는 일반 학생이 경험하는 폭력에 비해 빈도·강도·지속성 측면에서 훨씬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비해 스포츠 분야는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적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더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스포츠 현장의 폐쇄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언어 폭력을 포함해 강압적인 규제, 감시, 통제 등 폭력적인 문화 또한 폭력에 해당한다.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스포츠 폭력은 여전히 매우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포츠 폭력의 정당화 기제

스포츠 폭력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정당화된다. 첫째, 경기 실적을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 지도자는 경기 실적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법을 배워보지 못한 지도자는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 선수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지도자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치환된다.

둘째, 결속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정신력 강화와 단합을 이유로 체벌이나 폭력이 훈련으로 둔갑하고 암묵적으로 용인된다. 선수들은 폭력을 필요악으로 여겨 순응하거나, 오히려 일부 학생 선수나 학부모는 폭력을 옹호하고 정당화한다.

셋째, 선후배 간 위계질서와 폐쇄적인 운동부 문화를 위한 수단이다.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스포츠 분야의 폐쇄성은 폭력을 내면화하고, 결국 피해자는 미래의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이 발생한다. 대물림의 고리는 견고해서 개인이 끊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어느 분야든 폭력은 존재하므로 폭력을 0%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폭력을 예방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은 그 무엇에도 우선한다. 권력의 차이나 운동 기능의 차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인간화를 유발한다. 체벌이나 훈육을 통해 선수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을 자극-반응의 대상, 즉 인간이 아닌 기계로 객체화할 뿐이다. 둘째, 폭력은 선수를 불행하게 한다.

스포츠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분노, 불안, 공포, 우울, 소외감 같은 정서적 상처를 아주 오랜 기간 남긴다. 셋째, 올림픽 등수 등 메달 지상주의로 대표되는 스포츠 강국 패러다임은 국민 모두의 행복한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몽둥이로 만든 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은 스포츠를 국가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서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 없이는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되지 못하면 회유, 협박, 비방 등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스포츠 현장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폭력 없는 스포츠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글을 쓴 **홍덕기**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미국 노던 아이오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며 한국 스포츠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라톤을 좋아하며, 스포츠·교육·인권에 대해 관심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등 유죄 확정자 명단 공개

YTN PLUS
정윤주 기자

2021.06.09

앞으로 체육계에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실명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1월 빙상지도자의 상습 성폭력 사건, 2020년 6월 고(故) 최속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폭력을 근절하고 선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총 3차례 이루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명단 공개와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정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단체와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등 인권의식 향상 교육 이수 의무,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의 자유 보장,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마련 및 준수 의무, 스포츠 비리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및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및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문체부장관이 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인적사항과 비위 행위, 유죄 판결 확정 내용을 관보 또는 문체부 누리집에 게재하며, 이는 스포츠윤리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할 수 있다.

명단공개제도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책임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육계의 인권 및 윤리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체육단체의 체육지도자, 2년마다 윤리 및 인권교육 이수

체육계 인권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 2월 시행된 2차 개정 법에서는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체육지도자 포함),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육을 받지 않는 체육지도자에게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체육지도자의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학교와 체육단체에는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훈련 선택권 보장 등 선수 인권 보호 강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소 내에서의 사생활 자유와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합숙소 관리 기준을 정해 합숙 선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인권침해 등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징계정보시스템 등록 대상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 관계없이 신고받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는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체육지도자와의 채용 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3차 개정법 시행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스포츠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유죄 확정자 명단 공개,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 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건강한 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나아가 국민이 체육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대변화 따라야...결속력 약화 우려도”

여자 핸드볼팀 경남개발공사는 리그 8개 팀 중 유일하게 합숙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가 발표되면서 구단이 나서서 합숙소를 없앴다. '위로부터 개혁'이었다.

모든 선수가 합숙소에서 나간 지 세 달이 지난 현재 반응은 어떨까. 긍정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김현창 코치, 팀 내 연장자인 김이슬, 지난해 입단한 조수현은 이구동성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합숙 생활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슬은 "합숙소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독립하는 기분이 들었다. 걱정도 됐지만 편할 거 같아서 좋았다"고 했으며, 조수현은 "신인이어서 언니들과 친해지고 팀 분위기에 적응도 해야 하는데 자취 생활한다고 해서 걱정했지만 한편으로 처음 독립해서 살기에 설렘"이라고 말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각자 살게 되면서 우리보다는 '나'를 중요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목 특성상 단합이 중요한데, 합숙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동료들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부족해진 것도 사실이다.

퇴근 후 자기관리도 중요해졌다. 절제하지 않는다면 경기력이 저하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 김현창 코치는 "선수들 문단속, 몸 관리 등에서 걱정이 된다"면서도 "일단 선수들을 믿고, 선수들도 직장 스포츠이기에 스스로 자기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의 합숙훈련 폐지에 다른 팀 선수들은 부러워하고 있다고. 누군가는 이적하고 싶다고 문의하기도 했다. 감독들도 합숙훈련 폐지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합숙소 폐지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될지, 향상될지 판단하기 어렵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리그가 개막하고 경기를 치러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슬·조수현은 장기적으로 합숙 생활이 없어져야 한다고 봤다. 김이슬은 "합숙 생활을 계속하니깐 선후배 간 문제가 생기는 거 같고, 아무래도 싫은 소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도 기분 나쁜 데다 그 기분이 연장되는 거 같다"고 했으며, 조수현은 "후배라서 언니들 눈치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집에 가면 나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으니까 바뀌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



대한사격연맹

‘언어폭력 합숙 규정 위반’ 국가대표 3인에 엄정 징계

대한사격연맹이 칼을 빼 들었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2일 국가대표 3인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국가대표 선수 3명이 특정 선수 1명에게 다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것과 합숙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됐다. 스키트 간판 김민지가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기존 소속팀 창원시청에서는 퇴사 처리된 상태다.

연맹은 “현재 재심 신청 기간인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고려해 상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연맹은 “법률가, 교육인 등 외부위원 9인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스포츠 공정의 가치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객관적, 법률적 심의, 충분한 당사자 간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 아래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 이번 사안이 선수 및 지도자 전반에 걸쳐 스포츠 공정의 가치를 지키며 사적인 스스로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eong@sportsworldi.com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대표
이장호 변호사

[스포츠와 법의 만남] 스포츠계 징계

스포츠계에는 자체적인 징계규정이 있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당연히 스포츠인으로서도 따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스포츠계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규정에 의하여 의무사항이 정해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규정으로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체육회 관계단체 임원,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등록된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동호인, 회원, 운동부 등이 해당된다. 징계 사유로는 폭력,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 편파판정, 단체운영과 관련한 횡령, 배임, 직권 남용, 대회 진행 중의 각종 질서문란행위 등을 포함하여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한 경우 등이다.

징계는 구성원의 권리의무에 대한 중요한 제재행위이므로 형사법과 유사하게 엄격한 절차와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법제상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위원은 법조인, 스포츠분야 경력인, 인권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엄격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지만 위원회가 조사 및 청문절차를 거치는 정도이지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 증거조사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그래도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여 의결한다. 그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징계 무효소송으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위원회의 구성원이 대부분 회장이 위촉하게 되어 회장에 우호적인 사람과 비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징계절차에 있어서 불공평하게 적용될 여지도 있다. 종목단체에서 지속적인 분쟁으로 형사고소사건에 이르렀는데도 사무국이나 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상위단체에 감사를 요청하여 그 종목단체에 대한 위상만 떨어뜨리는 경우도 보았다. 그리고 집행부에 적대적인 경우 징계량에 있어서 자격정지 정도면 충분할 터인데 영구제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징계의 효력도 견책이나 해임은 어떤 효력인지, 자격정지는 몇 년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제명과 영구제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징계의 강화만이 능사인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징계의 수위를 높이면 일반예방효과는 있겠지만 반대로 스포츠 현장에서는 징계사유에 관한 은폐 내지 눈감아 주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계에 우리 법조인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프로축구선수협 “선수 동의 없는 이적 조항 수용 못한다”

선수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미봉책이라며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선수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확정했다. 축구를 비롯한 4대 프로스포츠의 표준계약서에는 트레이드 시 선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선수가 요청할 시 3일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선수협 측은 "표준계약서 확정 발표에 앞서 문체부와 독소조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가장 중요한 '이적 시 선수 동의'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수협 한 관계자는 "이적에 앞서 선수 동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라는 내용이 추가된 상황"이라며 "협의를 하라고 하지만 사실상 구단이 원하면 선수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연맹 차원에서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K리그 계약서에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영되더라도 내년 선수등록기간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구단 및 선수들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설명했다.

선수협 한 관계자는 "이적 시 선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삽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FIFA와 국제프로축구선수연맹(FIFPro)과 함께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문체부 한 관계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 계약서에 비해 선수 권익 측면에서 진전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추후에 수정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국제적 흐름 역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달 5일(현지시간) FIFPro는 K리그 표준계약서 중 '선수 동의 없이 구단 합의만으로 가능한 이적'을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U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upinews.kr

워커, “한쪽 무릎꿇기, 포기해서는 안 될 행위”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수비수인 카일 워커(맨체스터 시티)가 ‘한쪽 무릎꿇기’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8일(한국시간) 워커는 단독으로 진행된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인종차별 반대 퍼포먼스는 이어져야 하며, 스포츠의 명과 암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전 시행되는 인종차별 반대 퍼포먼스에 야유를 퍼붓는 행위에 관해 “반대의 목소리는 어쩔 수 없지만,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인종차별 폭력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축구계가 인종 차별 근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에도 말했듯,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놔두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내가 변화를 시도해야 세상도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 내 아들이 무릎을 왜 꿇냐고 물었다. 나는 그 물음이 기뻐다. 이제 내가 아이에게 인종 차별 문제를 교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전하려 하고 있고, 젊은 세대를 가능한 한 많이 교육하려 하고 있다. 어떤 인종인지, 피부색이 어떤지, 종교가 무엇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해 관중석 출입은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잉글랜드 내 방역 완화로 관중석 출입이 가능해지면서 ‘한쪽 무릎꿇기’를 향한 관중들의 야유소리가 문제가 됐다.

이에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야유를 퍼부은 관중을 강하게 비판했다.


감독은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퍼포먼스가 마치 정치적 입장처럼 동의하거나 하지 않는 입장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는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인권 문제는 동의를 요하는 문제가 아닌 존재에 관한 문제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은 한쪽 무릎꿇기 퍼포먼스를 이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편 ‘한쪽 무릎꿇기’ 퍼포먼스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제스처로 통한다. 이번 시즌 안토니오 루디거(첼시), 칼럼 로빈슨(웨스트브롬),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축구 선수들이 인종차별에 시달리며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필요성이 커졌다. 워커도 인종차별 폭력에 시달린 바 있다.

지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에서 첼시에 맨시티가 패하자, 팬들은 이날 경기에서 부진한 라힘스털링(맨시티)과 워커의 SNS로 몰려가 “큰 사고가 나서 죽어라”, “꺼져라 검둥아”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주간 체육시민연대 소식

보도자료	배 포	2021년 06월 10일(목)
	보도일시	2021년 06월 10일(목)
 체육시민연대 Civic Network for Justice in Sport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

성명서

**평택시체육회는 행정 6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임용거부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임용을 이행하라!**

2021년 3월 10일 평택시체육회는 행정 6급·8급 직원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로 최*용(접수번호 1002)과 노*주(접수번호 2001)를 각 공고하였다. 그러나 평택시체육회는 합격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최*용에 대한 임용만을 거부하고 있다.

평택시체육회(회장 이진환)는 기획·홍보를 담당할 팀장급 인재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평택시가 수탁받아 진행한 채용절차에서 그 취지가 무시되었다며 최*용에 대한 임용 여부를 향후 최*용이 제기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평택시체육회장은 채용절차에 없던 최*용과의 개별 면담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나이가 어리다.', '한체대, 용인대처럼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어서 선·후배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다.', '행정 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등의 위법·부당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평택시청과 평택시체육회 담당자들은 최*용에게 7급 임용을 조건으로 사태를 마무리하자는 회유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재 평택시체육회는 최*용이 보낸 3차 내용증명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중재에 나선 평택시가 당사자와 아무런 합의도 없이 사태가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청렴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체육회가 시대 역행적인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평택시체육회 규정집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택시체육회는 이번 사태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체육계의 개탄스러운 사례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용을 조속히 임용하고 임용 이후에도 '갑질'이나 '파돌림'없이 공정하게 절차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육시민연대는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 최종합격자 최*용에 대한 임용거부 사태에 대한 평택시체육회장의 공개 사과와 더불어 최*용의 임용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합당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1.06.10.

체육시민연대

주간 스포츠 소식

수원시, 스포츠 인권보호 등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47281?ref=naver>

수도권 스포츠 관중 30%까지 입장 가능

<https://www.news1.kr/photos/view/?4819479>

쿠팡, 여름 맞이 '2021 스포츠 레저 페어' 진행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1_0001473142&cID=13001&pID=13000

[집중 분석] 스포츠콘텐츠 유료화...어떻게 봐야할까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106131045003&sec_id=530101&pt=nv

터키 스포츠에이전시 "이다영, 그리스 1부리그 팀과 계약"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5206629080736&mediaCodeNo=258>

'스포츠 마케팅'으로도 설명 안되는 KT 농구단 이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61015022967700>

총격에 휩싸인 순간에도 핀란드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 축구로 하나 됐다

<https://www.goal.com/kr/%EB%89%B4%EC%8A%A4/a/9n8026l4z011ts8koc6gqe8x>

"스포츠·무도 특성 유지한 남북 태권도 융합발전 꿈꾼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6>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故 조오련 국립현충원 안장

<http://mksports.co.kr/view/2021/563005/>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